■ 지방세법 시행규칙[별지 제71호서식(전산용)] <개정 2024. 1. 22.> (앞쪽)

☜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.

보내는 사람

납 세 고지서

우체국

바코드 18㎜

음성변환용(외부)

과세번호			
담당자		문의처	

자동차세(자동차소유)

받는 사람

바코드 17㎜

우편반송용

납 부 장 소
은 행 방 문
전국 은행, 우체국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, 산림조합
가 상 계 좌
온 라 인

※상세안내 후면 참조

바코드 18㎜

음성변환용(내부)

지방자치단체 활용란

※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

∞ 시·군 자동차세 (수납은행 확인용)

납세자:

기관번호	세목
납세연월기	과세번호

전자납부 번 호	

납기 내:	까지
세 목	납부할 세액
자동차세	
지방교육세	
합 계	

납기 후:	까지
납기 후 금액	

수납은행용 바코드

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

∞ 시·군 자동차세(소유분)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(분) (납세자용)

납세번호	과세기관	검	회계	과목	세목	연도	월	기분	읍면동	과세번호	검

납 세 자: 납세자번호:

주 소:

과세대상:

지 방 세

세 목	납부할 세액	부과내역(과세표준)
자동차세		
지방교육세		
합 계		

납기 내
까지
납기 후
까지

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.

년 월 일

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

담당자: 문의처:

※ 이 영수증은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,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전자납부 번 호	

210㎜×297㎜(CP지 90g/㎡)

과세표준과 세율

	영업용		비영업용	
승용자동차	1,600cc 이하	cc당 18원	1,000cc 이하	cc당 80원
	2,500cc 이하	cc당 19원	1,600cc 이하	cc당 140원
	2,500cc 초과	cc당 24원	1,600cc 초과	cc당 200원
	※ 비영업용: 3년차부터 연 5%씩, 최대 50%까지 세액 경감			
그 밖의 승용자동차	영업용		비영업용	
	20,000원		100,000원	

	구 분	영업용	비영업용
승합자동차	고속버스	100,000원	-
	대형전세버스	70,000원	-
	소형전세버스	50,000원	-
	대형일반버스	42,000원	115,000원
	소형일반버스	25,000원	65,000원
화물자동차	구 분	영업용	비영업용
	1,000kg이하	6,600원	28,500원
	2,000kg이하	9,600원	34,500원
	3,000kg이하	13,500원	48,000원
	4,000kg이하	18,000원	63,000원
	5,000kg이하	22,500원	79,500원
	8,000kg이하	36,000원	130,500원
	1만kg이하	45,000원	157,500원
특수자동차	구 분	영업용	비영업용
	대형특수자동차	36,000원	157,500원
	소형특수자동차	13,500원	58,500원
3륜 이하 소형자동차	구 분	영업용	비영업용
	대형특수자동차	36,000원	157,500원
	소형특수자동차	13,500원	58,500원

구분	과세표준	세율
지방교육세	자동차세 납부할 세액	30%

자동차세 부과 안내

과세근거	▪ 「지방세법」 제124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제149조부터 제154조까지
납세의무자	▪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·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
징수방법	구 분 / 과세기간 / 납 기 제1기분 / 1~6월 / 6.16~30. 제2기분 / 7~12월 / 12.16~31.
납부지연 가산세	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방세액의 3%가 부과되고, 해당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(최대 60개월까지) 그 지방세액의 0.66%가 추가로 부과됩니다. ※ 계산식 납기 내 지방세액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의 3%)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 × 0.66% × 경과월수)

구제신청 기한 안내

이의신청	▪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
심판청구	▪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※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지방자치단체 활용란